

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4나○○○○○○○ [2심]	사건유형	소유권이전등기
원고	김○○	피고	인천광역시교육감외 1
판결선고일	[2심]2024. 10. 2. [1심]2024. 1. 9.	비고	2024. 10. 22. 확정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1950년 전 624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구)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당한 소외 망 김○○의 상속인임.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의 선대 김○○의 소유인데 대한민국은 적격농가가 아닌 ○○초등학교에 농지분배를 하여 학교 실습부지로 사용되었음. 학교는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안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,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함.</p>		
주문	<p>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판결요약	<p>○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를 받을 수 없는 '○○초등학교'에 토지를 분배한 분배 농지부와 상환대장이 있음은 사실이나, 피고 대한민국이 설령 위법하게 학교에 토지를 분배하였더라도 이후 이와는 별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외 ○○에게 위 토지가 분배되었을 여지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.</p> <p>○ 또한, 부동산 등기취득시효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·증명하여야 하는 바, 달리 무효사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.</p>		